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9/ 17 통권 174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결정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상법개정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높은 기업 유형 (2)
- 기업회계상의 선적지인도조건 충족하는 경우만 미차상품을 재고자산으로 반영함
-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결정
- 지방세제 개편안 문답자료
-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완료시에는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부모사망전 증여의 의미와 장·단점〉

개념 구분	의미, 효과, 장점, 계산 비교 등
〈장점〉	
10년단위 구분	증여재산을 10년 단위 합산으로 구분하면, 10년마다 낮은 세율 (10~20%)을 여러번 적용함. 사전증여 없으면 향후 사망시 일괄합산되어 높은 상속세율 적용
낮은시가 적용	일찍 증여할수록 물가상승 대비 낮은 평가액으로 계산되어 낮은세율 적용
가족재산순환	부모재산이 조기에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의 사업자금과 주택취득 등 가능
이익금액 전달	일찍 증여된 자산의 이자·임대료 등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없음
수명연장 순환	한국인 평균 수명 연장에 대응하여 선증여 통한 세대간 자금순환 촉진
향후 양도세 감소	선증여재산 양도시 증액된 증여가액이 취득원가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감소됨
창업자금 증여	창업자금증여액(50억원까지) - 5억원 차감 후 낮은세율 10%만 적용 (조특법 제30조의5)
가업승계증여	가업주식자산평가액 - 10억원 차감 후 낮은세율 10%만 적용(조특법 제30조의6)

〈단점〉

생활력 영향	너무 일찍 증여하면 자녀의 독립생활 의지에 반대작용
승계재산 훼손	자녀의 재산관리능력 부재시 탕진 가능성 있음(60대에 증여)
상속재산 합산	창업자금 증여와 가업승계증여 재산은 10년 넘어도, 최종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45호 / 주간 38호

2025. 9. 17.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모 사망 전 증여의 의미와 장·단점	표지
CEO의 경영 산책	상법개정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높은 기업 유형 (2)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법인 소유 상가지분 매매 시 부가세 부과여부 - 단가소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부가세신고·자산취득명세서 - 외상채권 및 미수금 대손처리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기업회계상의 선적지인도조건 충족하는 경우만 미착상품을 재고자산으로 반영함	7
매일 절세 재무요점	- 법인 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가산세	9 10
직장인 Survival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5가지 원칙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서면법규법인-4013, 2024.07.25) -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서면법규법인-4008, 2025.02.17)	12 13
세정 뉴스와 해설	李 대통령, ‘대주주 기준 10억’ 한 발 물러서...“고집할 필요 없다”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완료시에는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12
세무정보	-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결정 - 지방세제 개편안 문답자료 -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15 17 33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상법개정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높은 기업 유형 (2)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2025년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변경을 넘어, 기업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경영진은 투명성과 책임경영, 주주 소통,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 경영 등에 대해 전방위적 전략적 검토를 통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법 개정은 기업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영과, 주주와의 적극적 소통이 요청된다.

● 기업전략 수립에 고려할 주요 현안 등

최근 개정 상법을 중심으로 기업 전략에 수립에 고려할 주요 현안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되어, 모든 경영 판단 시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화가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 이사회 및 위원회 구조 재편

독립이사(사외이사) 명칭 및 역할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이사회 내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전문 위원회 신설(예: 지속가능 경영 리스크 관리위원회 등)과 의사결정 절차의 객관성 강화가 필요하다.

•전자주주총회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IT 인프라와 정보보안 체계 강화가 요구됩니다. 주주 참여 확대와 주주총회 운영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다.

•공정거래법 및 노동법 개정

공정거래, 노동자 권리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중심의 입법이 강화되고 있다. 노동환경 변화, 최저임금 인상, 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높은 기업 유형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기업 유형이 특히 높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기업의 조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1. 지주사 전환 사업재편 추진 기업

- 대규모 M&A, 분할, 합병 등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합병 비율, 분할 방식 등에서 소액주주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송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다.

2.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사

-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대기업 집단으로 일감 몰아주기, 비정상적 자산 이전 등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논란에 취약함.

3. 지배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낮아 경영권이 불안정한 기업으로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공격 및 소송 타겟이 될 가능성 높음

4. 과거 지배구조 논란이 있었던 기업

-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중복상장 등으로 논란이 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유사한 의사결정 시 과거 사례가 소환되어 소송 및 경영활동 제약이 우려됨

5. R&D 등 장기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

- 미래 성장 위해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제약, 바이오, 첨단산업 등)은 단기 실적

하락이나 주가 변동으로 인해 이사의 배임 소송 등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6.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기업

- 총수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물적분할, 중복상장 등 전통적 지배구조를 가진 그룹은 3% 룰, 집중투표제 등으로 경영권 방어가 약화되고, 주주권 강화로 소송 리스크가 커짐
-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에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주요 조항이 적용

위와 같은 기업들은 소송, 경영권 분쟁, 의사결정 위축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 내부거래, 경영권 방어 취약 기업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가 요청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5일 (금)	9월 8일 (월)	9월 9일 (화)	9월 10일 (수)	9월 11일 (목)
미	달	러	(USD)	1392.70	1391.80	1390.40	1386.60	1387.60
일	본	엔	(JPY)	937.88	938.28	943.25	940.93	941.70
영	국	파운	(GBP)	1871.02	1877.12	1884.06	1875.86	1878.39
캐	나	다	(CAD)	1007.74	1005.60	1007.50	1001.48	1001.05
홍	콩	달	(HKD)	178.53	178.48	178.41	178.04	178.13
중	국	원	(CNH)	194.99	195.18	194.89	194.71	194.78
유	로	화	(EUR)	1622.43	1629.45	1635.74	1623.85	1624.05
호	주	달	(AUD)	907.76	911.56	917.04	913.21	918.52
싱	가	폴	(SGD)	1080.03	1082.23	1083.79	1080.87	1082.37
말	레	이	(MYR)	329.63	329.42	329.67	329.67	329.21

법인 소유 상가지분 매매 시 부가세 부과여부

Q 법인이 소유한 상가지분 매매시 아래 두가지 케이스에 대해 부가세 부과여부 문의드립니다.
 1. 법인 간 거래 시
 2. 법인과 개인 거래시

A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거래에 부과되는 것으로 공급받는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가지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가소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문의

Q 당사는 자동차부품업으로 가단가로 매출 후 단가소급이 발생하였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가단가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 하였으나 8월 단가가 확정되어 단가소급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발행하였던 3월 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현재 단가가 확정되었을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발행이 아닌 확정된 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일년동안 가단가로 매출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1년동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체 다 수정발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일반적으로 단가가 확정이 된 때 실무적으로 당월 발행 계산서로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단가변경이 확정된 시점에 그 변경일을 작성일로 하여 추가된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_자산취득명세서

Q 자산 취득 관련 부가세 신고시, 차량 취득 시 부대비용에 대한 아래 질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자동차 번호판 같은 부대비용을 자산취득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는지?
2. 만약 포함해야 한다면, 불공제인 경우 제외해도 되는지?

A 자동차번호판은 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상채권 및 미수금 대손처리

Q 1. 외상채권 중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별도 증빙없이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2019년 이전 거래에 대한 외상매출금도 가능한지요?

2. 해외외상채권도 대손 가능한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A 1. 외상채권도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민법상 단기소멸시효는 3년)이 완성되는 시점에 처리하게 되며 대손처리를 하려면 회수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해외 채권도 대손요건이 충족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회계상의 선적지인도조건 충족하는 경우만 미착상품을 재고자산으로 반영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은 결산과정을 통해 특정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는데, 명확한 결산을 위해서는 거래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매출 및 매입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일 전후에 발생한 거래의 경우 어느 회계기간의 거래인지 정확하게 결정하여야 특정 회계기간의 매출,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거래의 귀속시기 결정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미착상품의 장부계상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만 재고자산으로 반영

결산시점에 미착상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실무자들이 실수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FOB 조건, CIF조건에 따라 재고자산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FOB조건이라면 무조건 선적시점에 재고자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는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이 아니다.

기말 현재 운송중인 미착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자산 계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제7장 재고자산)은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목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계상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인식”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제7장재고자산

실무지침 7.5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제16장의 제1절 ‘수익인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7.3)

(1) 미착상품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는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선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착상품에 대한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인식할지의 여부는 법률적인 소유권 즉, 선적지인도조건 및 목적지인도조건의 매매계약상 거래조건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수익인식)에 따라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고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FOB조건 등은 미착상품의 재고자산 반영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무역 거래 당사자들 간에 법률, 언어,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약칭INCOTERMS)’라는 무역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다.

INCOTERMS는 매수인 및 매도인의 운송수단·주체 및 검사 등에 대한 의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 및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규정으로 CIF와 FOB를 포함하여 11가지 거래 조건이 기술되어 있다.

즉, CIF와 FOB 등은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의무와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 및 비용의 부담 주체를 분류해 놓은 규정 중의 하나일 뿐이며, 해당 거래 조건이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적지인도조건, 목적지인도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FOB조건이라고 해서 모두 선적시점에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FOB조건일지라도 계약서를 검토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이 대부분 언제 이루어지는지, 거래 이후에도 매도자가 재화의 운송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지는 않는지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최종 판단 결과 계약조건이 선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미착상품을 매입자의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참고]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거래 종류

EXW-작업장 인도조건	CIF-비용·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DAP-도착지 인도조건
FCA-운송인 인도조건	CPT-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DPU-도착지 양하인도조건
FAS-선착인도조건	CIP-운송비·보험료 지불인도조건	DDP-관세지급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	CFR-운임 포함 인도조건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 법인 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 유형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소득에 과세	과세
비영리 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상동	과세하지 않음

화 — 금융위 해체 이후 주요 과제와 전망

과제	현재 추진 상황	해체 이후 우려
가계부채 관리 (6.27 대책 등)	무주택자 LTV 40% 강화, 대환대출 허용 등 속도감 있게 대응	정책·감독 분리로 신속한 후속 대응 어려움
자본시장 밸류업 (코스피 5000)	밸류업 지표 마련, 제도 개선 추진 중	조율 창구 분산 → 동력 약화
취약차주 채무조정·배드뱅크	장기연체채권 처리, 2금융권 협업 논의	정책 이관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 능성
스태이블코인 제도화	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주도, 글로벌 동향 대 응	추진 속도 지연 시 국제경쟁 뒤쳐질 우려
첨단산업·관세피해 기 업 지원	특별 금융지원·정책금융 확대 추진	정책 기능 분산 → 신속지원 한계



부가가치세 가산세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2%(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1%)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 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 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일 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③1·3·5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0.5%)가 적용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5가지 원칙

1. 비판은 잠시 미뤄두기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판’이에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창의성의 첫걸음입니다.

2. 양(量)에 집중하기

좋은 아이디어는 대개 수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탄생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일단 많이 쏟아내는 데 집중하세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3. 다양한 시각을 모으기

한 분야의 전문가만 모이면 사고가 좁아질 수 있어요. 다른 부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발상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기

화이트보드, 포스트잇, 마인드맵 등 눈에 보이는 도구를 활용하면 생각이 더 쉽게 확장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이디어들은 새로운 조합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됩니다.

5. 아이디어를 ‘합치고 변형하기’

완전히 새로운 발상만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나온 아이디어들을 서로 결합하거나 변형해보세요. 작은 아이디어들의 조합이 혁신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완료시에는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서면법규법인-4013, 2024.07.25

질 의

- 질의법인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함

질의

- 내국법인이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1안)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
(2안) 기계설비 취득은 재화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투자완료일에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

회 신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

로 보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의 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4505, 2025.02.18

질 의

- 신청인은 당초 근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회사가 미국회사와 합작투자에 의한 신설회사 설립을 결정하고 신청인이 근무하던 부서가 사업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신설법인으로 재입사함
 - 신청인은 "00년 당초 근무회사를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하 "1차퇴직금수령") 신설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함
- 당초 근무회사는 "17년 미국회사와의 합작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지분을 매각함
- 신청인은 "23년 신설회사에서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음(이하 "2차퇴직금수령")
- 신청인이 신설 법인으로 진출할 당시에는 당초 근무법인과 신설법인간 출자관계가 있었으나, 최종 퇴사 시점에는 그 출자관계가 소멸됨

질의

- 관계사 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서면법규법인-4008, 2025.02.17

■ 질 의

- 질의법인은 '21.xx.xx.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경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으로
- 조경건설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 50%)을 적용받던 중,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22.xx.x)

질의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 법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회 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제2호에 따라 그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2627, 2025.02.12

■ 질 의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하여 손비로 처리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李 대통령, '대주주 기준 10억' 한 발 물러서... "고집할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체적인 의견은 원래 기준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새 정부 경제 정책 핵심인데, 양도세 기준 강화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결손 정도가 2000억~3000억원 정도다.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걸로 봐서는 굳이 10억원으로 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휴먼 개미', '잡재적 투자자'라고 언급하며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재정 당국에서는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 없는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중이다"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약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대부분 소액 주주들이 소유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더 세계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계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자체를 키우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비수도권 4→9억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적용은 올해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

택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는 양도일이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로 한다.

올해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밖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절차가 합리화됐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식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엔 2025년 방식으로 계산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2026년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된다.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이동' 올해 비용분부터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부문의 7개 기술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전략산업기술 적용을 받는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가운데 2개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신설된 인공지능 세부기술 항목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이전트 인공지능?학습 및 추론 고도화?저전력 및 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다.

신설된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항목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다.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부문은 원래 신성장?원천기술 쪽에 있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됐다.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 부문 내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내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부문 가운데 주행상황 인지 단독 센서, 단독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의 경우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를 확대한다.

확대된 부문은 올해 7월 1일 이후 비용분부터 세액공제를 인정한다.



-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참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지방세제 개편안 문답자료

- 국세청, 2025. 9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1.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특례법)

① 지역별 차등 감면을 도입하는 이유와 내용은?

-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 지역 경제와 연관된 감면*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의 감면율을 수도권보다 확대하는 등 지역별 차등 감면을 설계
 - * 산업·물류·관광단지,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2.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감면 확대(특례법)

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12호에 따라,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 업종을 확대하는 이유 및 업종은 무엇인지?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산업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창업 감면 업종 외에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야영장업 및 관광펜션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할 예정
 - * 농업인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산업

3.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지방세법령·특례법)

① (세컨드 홈)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 지원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광역시 5개 구 제외, 84개 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광역시 7개 구 제외, 9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4개 지역 중 80개 지역)의 경우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함
 - * (취득세) 취득가액 3억 → 12억(150만원 限) / (재산세) 공시가격 4억 → 9억
- 다만, 수도권 규제 대책(6.27.) 등 정부 정책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수도권 지역*은 지원 지역에서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수도권 지역**은 가액기준 현행 유지(취득세 3억, 재산세 4억)
 - * 동두천시, 포천시 2개 지역, **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4개 지역

<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방안 >

구분	현행		개선	
인구감소지역 (89개)	가액기준	(취득) 취득가액3억 (재산) 공시가격4억	가액기준	(취득) 취득가액12억(150만원 限) (재산) 공시가격9억
		• (대상) 84개 지역 ※ 광역시 5개 구 제외		• (대상) 84개 지역 중 수도권 외 80개 지역 ※ 수도권은 현행과 동일(취득가액 3억, 공시가격 4억)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	신설		가액기준	(취득) 취득가액3억 (재산) 공시가격4억
			• (대상) 9개 지역* * 강릉·동해·속초·인제·익산·경주·김천·사천·통영 ※ 수도권 2개 시 및 광역시 7개 구 제외	

② (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 취득 시 취득세 증가를 제외하는 이유?

- 인구감소지역 내 조속한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전·월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장·단기(10·6년) 민간임대등록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1년 한시로 취득세 증가를 제외하려는 것임

참 고 임대주택 유형 및 증가 제외 신설 대상

유형	6년 단기임대('25.6 시행)		장기일반(10년)		공공지원(10년)	
	매입	건설	매입	건설	매입	건설
	인구감소지역		그외지역	인구감소지역		

③ (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증가 적용 대상 및 효과는 무엇인지?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25.8.14.)

-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1~3%)이 적용되며, 주택 수에서 제외됨
 ※ 취득 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기간 중 매각·증여시 차액 추징

④ (사원용 주택)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게 임대 또는 무상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를 경감(자치단체 조례로 25% 추가 경감 가능)

4.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특례법)

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하는 이유는?

- 기업도시·낙후지역의 개발 육성을 통한 지방 투자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감면연장

2. 지방 부동산 활성화

1.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방세 지원 확대(지방세법령·특례법)

① (감면)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25.8.14.)

- 최종 주택 수요자인 수분양자 감면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 빠른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감면기한을 1년으로 정함

② (취득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증가를 제외하는 취지 및 효과는?

-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6억 이하)는 취득세 증가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주택 수 제외의 경우는 기존 주택 수에 따라 지원 효과가 상이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증가를 제외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주택 수 제외 VS 증가 제외 효과 비교 >

취득 주체	주택 수 제외	증가 제외
개인	(기존 2주택) 8% → 1~3% (기존 3주택 이상) 12% → 8%	주택 수 관계없이 1~3% 적용
법인	12%	1~3%

③ (취득세)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가세 제외가 적용되는지?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25.8.14.)

-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취득세 증가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참 고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개요**

□ (도입) ‘20.8월 주택시장 과열 상황에서 투기수요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다주택자 등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도입

▶ (개인) 세대별 주택수(기존 주택수 + 신규 취득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8~12%) 적용, (법인)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 세율 적용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 (중과제외 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2.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지방세법령·특례법)

① 빈집 정비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 방치된 빈집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지역의 위생·안전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발적 정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5년간 50% 감면
 - 빈집 철거 후 주차장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시, 종전 세부담 완화 기간을 확대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체 기간동안 세부담 완화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철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 또는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 감면

<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구 분		현 행	개 정
철거 후 토지	감면	< 신 설 > - 3년간 별도합산 적용 - 5년간 철거 前 주택세액 기준 세부담상한 계산	재산세 50%(5년간)
	재산세 부담 완화		공공 활용하는 기간 전체로 확대·적용
신축	감면	< 신 설 >	취득세 50%*(150만원 限) * 법 25% + 조례 25% ※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 시

3. 투자·고용 촉진

1.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신설(지방세법령)

①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이유는?

-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비해 근로환경, 복지, 교육여건 등이 열악해 숙련된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음
 - * '22년 기준 전체 이동자(4,159천명)의 기업규모별 비중은 중소기업이 71.3% 차지
 - 숙련된 인력 유출은 신규 채용 및 재교육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여 지역 경제가 약화되는 문제 야기
- ‘장기근속수당*’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 이를 통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과 우대 제도 강화를 촉진하여 인력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법정근로수당은 아니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될 경우 지급 가능

②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킨 이유는?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급격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비수도권과 유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
 - * (총 4곳) 인천 강화군 · 옹진군, 경기 가평군 · 연천군

2.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특례법)

①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이유는?

- 인구감소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 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출 사유는 일자리 > 주거 > 교통 順(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

② 1인당 공제액을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 고용 관련 국세 감면 수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등을 고려하여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으로 설정
 - * (예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1인당 일반기업450만원, 중소기업700~770만원 법인세 감면
 -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0.9~2.4%, 법인세(9~24%)의 10% 수준

II 민생안정 지원

1. 출생 및 양육 지원

1.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재설계(특례법)

①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신혼부부, 청년층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②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한도금액을 확대(200만원 →300만원)하는 이유는?

- 인구유입 등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지방세법령)

① 출산 전·후 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이유는?

- 육아휴직 제도의 법적 보장 강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
 - * 육아휴직자(통계청): ('17) 142,038명 → ('20) 171,959명 → ('23) 195,986명
 -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이 불가피하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어 기업은 인건비 등 실질적 운영 부담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대체 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 필요
 - 출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종업원의 업무 대행 시 해당 급여를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

(예시) ○○기업이 1년 육아 휴직한 종업원의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연봉 4,200만원)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급여(월 350만원)를 1년까지(종업원 휴직기간) 급여총액에서 제외

②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 복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그 이후 급여도 공제 대상인가?

- 대체인력 급여 공제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기간에 지급된 급여로 한정
- 휴직자 복귀 후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대체 목적이 종료되므로 급여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서민·취약 계층 지원

1.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특례법)

①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추가하는 이유는?

- 동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와 과세형평성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입주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 (든든전세)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주택을 HUG가 경매로 낙찰받거나,

협의매수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특례법)

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사회복지법인 등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점 등 고려하여 일몰 연장하였음

3. 근로자장애인 등 지원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 연장(특례법)

① 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직업 재활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며,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등 국가공단 등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였음

3. 생활 및 물가 안정

1.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특례법)

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해당 공사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기관으로
 - 해당 공사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농수산물 수급 활성화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철도관련 공공기관 감면 연장(특례법)

① 철도 공공기관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철도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등을 완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철도 공공기관의 감면을 연장



3.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특례법)

①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이유는?

- '24년 12월 발표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 「소방시설법」에 따라 非 의무대상인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유인을 통하여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 하고자 감면 신설
 - 「소방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이 건축 및 대수선을 통하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2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를 신설하였음

III

납세자 친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1.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확대(기본법)

①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 납세자보호관이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의단계인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참여 및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 납세자가 불복청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현재는 납세자보호관이 불복청구 심의의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여 불복청구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다각적 검토의견 반영이 어려움

② 세무부서와 역할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 세무부서는 과세권 행사 주체로서 주로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와 독립되어 납세자 권리보호 역할 수행
 - 세무부서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객관적 검토가 담보되지 않으므로,
 - 공정한 불복청구를 통해 납세자가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의 객관적·

다각적 검토 의견 반영이 필요

2. 주택 취득 후 증과세 제외 요건 미충족 시 절차 개선(지방세법)

① 주택 취득 후 증과세 제외 요건 미충족시 증과세 추징 절차 개선의 주요 내용과 적용 효과는?

- 현행 주택 유상 취득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리 적용 중
 - 단, 실수요자, 주택 공급 등을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증과대상에서 제외 중
 - * 일시적 2주택자가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목적주택을 취득하여 1년 내 멸실, 3년 내 신축 및 5년 내 판매하는 경우 등
- 증과 제외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는데, 이때 납세자 신고 없이 추징하는 것은 조세행정적으로 부담이 크므로
 - 既 운영 중인 유사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되, 가산세는 새로운 신고납부기한부터 적용
 - * (과밀억제권역 증과 관련) 증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증과 제외되었으나 취득 후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 이후 60일 이내 신고
- 이 경우 (현행)당초 취득 시점(A)부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하나, (개선)증과세 신고·납부기한(B) 내 신고 시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변경되어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② 적용 대상 및 시기는?

- (적용대상) 취득세 신고 당시 증과 제외 또는 주택 수 제외 요건에 해당 되어 취득 당시에는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 사후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예요건 등을 미충족하여 증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 * (예시) ①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 후 3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②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목적으로 주택 취득 후 1년 내 멸실, 3년 내 신축, 5년 내 판매하지 못한 경우 등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중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징수법)

①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 압류금지 재산 범위의 확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임
-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 의수족·휠체어 등 신체보조기구, 재난방지 시설 등과 같이 생계와 직결된 재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여 채납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구분	현행	개정
압류금지 재산	절대적 금지 의복·침구·가구, 식료·연료(3개월), 학업 서적·기구, 제복 등 조건부 금지* 농업·어업·직업용 기계·비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으로 일원화 ■ 신체보조기구(의수족, 휠체어 등), 재난방지 또는 보안 관련 물건 등 추가

* 채납자가 채납액에 충당할 만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압류 금지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적용 범위 확대(행정제재부과금법)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 채납절차에 한정된 현재의 적용범위 하에서는 국민 권익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 적용범위를 기존 채납에서 징수·부과까지 확대하여 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국민 편의 증진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지방세법)

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는?

- 법인세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신고·납부기한을 일반법인보다 1개월 더 부여하고 있으나,
 -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신고·납부기한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1개월 연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은?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임
 - * ①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②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③지배주주 등 지분을 50% 초과 등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법인

2. 세무조사 등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기본법)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한 이유는?

- 국세는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조사 시작 20일 전에 통지하고,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 7일 전에 통지토록 개정*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25.11.시행)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조사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도 사전통지 기한을 국세 규정과 일치 필요

< 지방세 및 국세 사전통지 기한 비교 >

구분	「지방세기본법」 §83①	「국세기본법」 §81의7①	
		개정 전	개정 후('24.12.31.)
세무조사	15일 전	15일 전	조사 시작 20일 전
재조사			재조사 시작 7일 전

※ (재조사 결정사유)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에서 납세자의 불복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과세처분의 취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IV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제도 합리화

1.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지방세법)

①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취지는?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음
 - 또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 (법인세) 9~24% → (법인지방소득세) 0.9~2.4%
-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임
 - 이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합리화(특례법)

①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이유는?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마을회가 마을회관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건축공사 등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에 맞게 추정 요건을 완화*하였음
 - * (당초) 취득일 1년 이내 직접 未사용 → (개선) 취득일 2년 이내 직접 未사용

2. 공정 과세 실현

1.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기본법)

①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되, 상속 포기 등으로 납세의무 승

계를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가 불가하나, 상속포기,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 회피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체납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 (현행) 상속 전부 포기한 경우 →

(개정) 상속 전부 포기 + 일부 포기, 지방세 등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 납입한 경우

② 수령한 사망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인지?

- 상속인이 상속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의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나,
 -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전체기간’과 ‘체납기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전체기간’과 ‘체납기간’ 비율로 보험금을 안분한 금액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

A :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B :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일수

C :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취득세 적용기준 개선(지방세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유상거래에서 취득세 적용기준 개선의 주요 내용과 개정 이유는?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무상취득) 간주
 - 다만, 대금지급 사실과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 등의 재원이 입증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매매(유상취득)로 인정함
 - * ①경·공매를 통한 취득, ②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 ③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의 교환, ④대금 지급 사실 등이 증명되는 경우

**< 무상유상 취득 원인별 세율 >**

구분	(원칙) 무상	(예외) 유상-대가지급 확인시
세율	3.5%	주택1-3%

- 이 경우 대가 등 입증금액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매로 인정됨에 따라 변칙 증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해당 기준은 동 제도 취지, 운영 현황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

(예시) 시가 6억원 상당의 부모 소유의 집을 1억원에 자녀가 유상취득(대가지급 등 입증)하는 경우 시가 6억원에 유상세율(1%) 적용(증여의제시 무상세율(3.5%) 적용)

※ (취득세부담 예시)

<무상 의제시> 2,100만원(6억원 × 3.5%) vs. <유상 인정시> 600만원(6억원 × 1%)

3.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지방세법)

①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이유는?

- 회원제 골프장은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 및 보유시 중과세 대상*임
 - * (취득세) 일반세율 + 8% (재산세) 4% 고율 분리과세
 - 현재는 골프장이 신설되는 경우만 중과가 적용되고 골프장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 방식에 따라 중과 적용 여부가 달라 과세형평이 저해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 국세청, 2025. 9

1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배경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간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체납액] ('21) 99.9조원 → ('22) 102.5조원 → ('23) 106.1조원 → ('24) 110.7조원
[체납자 수] ('21) 127.6만명 → ('22) 132.6만명 → ('23) 133.7만명 → ('24) 133.0만명

- 또한, 국세행정 전산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행정이 증가하여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목표

-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입니다.
- 총 3년간('26년~'28년) 모든 체납자('24년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유형분류를 통해 ①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②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3 세부 운영 계획

□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질문, 납부의사 및 납부계획 확인 등

○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①생계형 체납자, ②일시적 납부 곤란자, ③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분	유형	조치사항
생계형 체납자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복지연계 등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실시
일시적 납부곤란자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이나, 납부 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경우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 보류, 분납 등 납부유도
고의적 납부기피자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TF」를 구성하였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 중 |

① (법령) 실태확인 범위,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확인 법적근거(국세징수법)마련 → 세제개편안 반영

② (예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 정부 예산안 반영

③ (조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활동 지원, 실태확인 결과 분석·활용업무 필수인력 확보 → 추진 중

○ 향후,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실시

- 국세청은 9.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 확인 시범운영(Pilot-Test)*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도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역)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7개 지역)
- (운영기간) '25.9.3. ~ '25.9.16. (3주)
- (실태확인 대상인원) 약 4천여 명
- (활동시간) 전화상담·실태확인 활동은 오전10시~오후5시까지

- 시범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 야기·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향후 메뉴얼 등에 반영하여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유형①) 생계형 체납자 사례

※ 아래 1번은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례입니다.

1. 교통사고에 따른 실명으로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진 체납자

- (생활실태) 대전광역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 실명 치료를 위해서는 시내에 큰 병원을 방문하여야 하나, 주변에 도움 주는 이가 없고, 배우자도 과거 뇌출혈 이력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특히,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이 절실하나 외출을 도울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실명 치료와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치계획)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2. 일용근로를 통해 홀로 생계를 유지 중인 독거노인 체납자

- (생활실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고령으로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며, 일정한 고정수입 없이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B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로,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 '20년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뒤,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분납으로 납부하려 하였으나,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이후 체납액이 늘어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통보되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일용근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조치계획) B씨의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생계곤란자인 경우 지자체 긴급복지 대상자로 통보하고, 직업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유형②) 일시적 납부곤란자 사례

1.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사업을 재기하여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

- (생활실태) 경기도에 거주하는 C씨는 집중호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산을 정리하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22년 8월 경기·수도권 일대 하루 100~300mm의 집중호우로 46명의 실종·사상자 발생
- 침대·소파 제조업을 영위하는 C씨는 '22년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어 고액의 체납 발생하였습니다.
- C씨는 재기를 위해 자택을 처분하고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10명의 직원과 재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조치사항) 관할세무서는 C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하였고, C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입니다.

2.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탄력적 강제징수로 납부여력을 회복하여 완납한 체납자

- 경남에 거주하는 D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3년까지 매출이 줄고 체납액이 계속 늘어 거주 중인 자택을 공매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 장기간 매출 감소와 금융기관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사업 위기가 발생하였고, 체납액도 늘면서 관할 세무서에서 신용불량 통보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매예고 통지 등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치사항) D씨는 소액이지만 월 50만원씩 분납을 약속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D씨에게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탄력적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 D씨는 총 30회의 분납약속을 성실히 모두 이행하였으며, 강제징수 유보 이후 매출이 늘면서 납부여력을 회복하고 최근 체납액을 완납하였습니다.

(유형③) 고의적 납부기피자 사례

※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만을 확인하고, 국세공무원이 생활실태와 과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수색 등 강제징수를 실시합니다.

1.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 (생활실태)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E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하였습니다.
- 추적을 통해 체납자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롤스로이스, 벤츠 등 고급자동차 5대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해당 주소에는 고액의 체납을 하고 있는 체납자의 자녀와 함께 거주 중
- E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〇억원을 압류하였고, 수색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전처와 동거인 명의로 〇〇억원의 허위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 허위 저당권 설정을 통해 해당 아파트가 처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여 강제징수 회피
- (조치계획) 전처·동거인 명의의 허위 저당권 설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자의 고가 아파트를 공매처분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2. 재산을 은닉하여 호화주택에 거주하면서도 계속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

- (생활실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F씨는 고액의 양도세 등 〇〇억원을 체납한 뒤 시세 100억원을 초과하는 타인명의(전 처 추정) 초고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전 처는 체납자 소유 아파트에 주소를 두었으나, 해당 아파트 '22년 매각 후 주소지 불명 상태
- F씨는 서울 소재 대형마트·영화관이 입점한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으나, 매각 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00억원을 체납하였고, 대표로 재직하던 숙박업 경영권 매각 소득과 운영하던 대부업 소득도 은닉하였습니다.



○ 당초에는 분납을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계속 납부 거부 중 입니다.

□ (조치계획) 전처 소유로 추정되는 주거지를 실태확인한 뒤, 거주지 수색 및 양도대금 은닉처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 기대효과

□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복지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재기를 도와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전국적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 실태확인을 반영한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 분석으로 추적조사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선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엄단하여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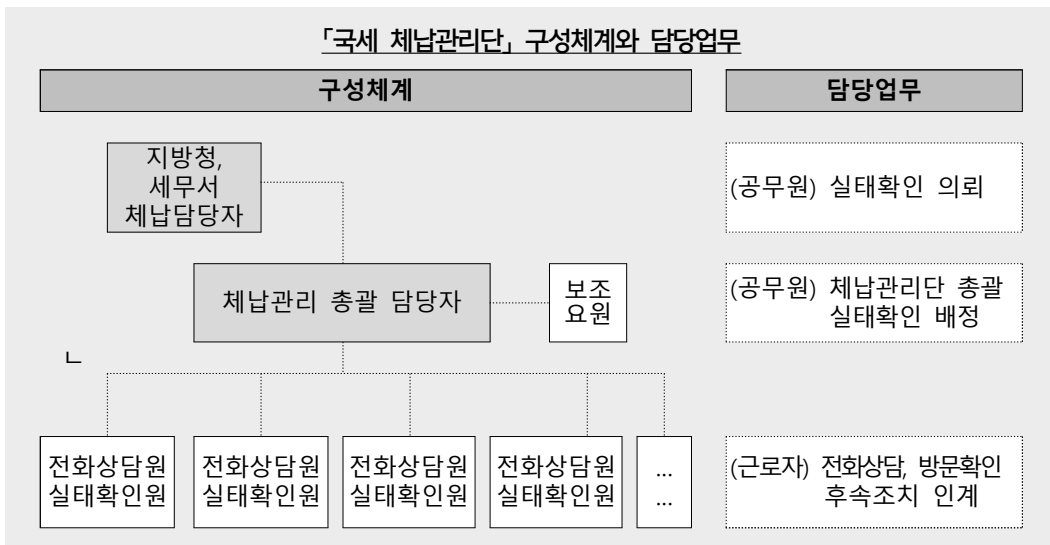
「국세 체납관리단」 구성 및 운영체계

□ 국세청은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의 성과를 거두었던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분야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 지방세와 구별되는 국세체납의 특성*과 전국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국세체납 업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 실정에 적합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 중

* 지방세는 주로 재산에 과세되는 반면, 국세는 소득·거래에 과세되며 그 규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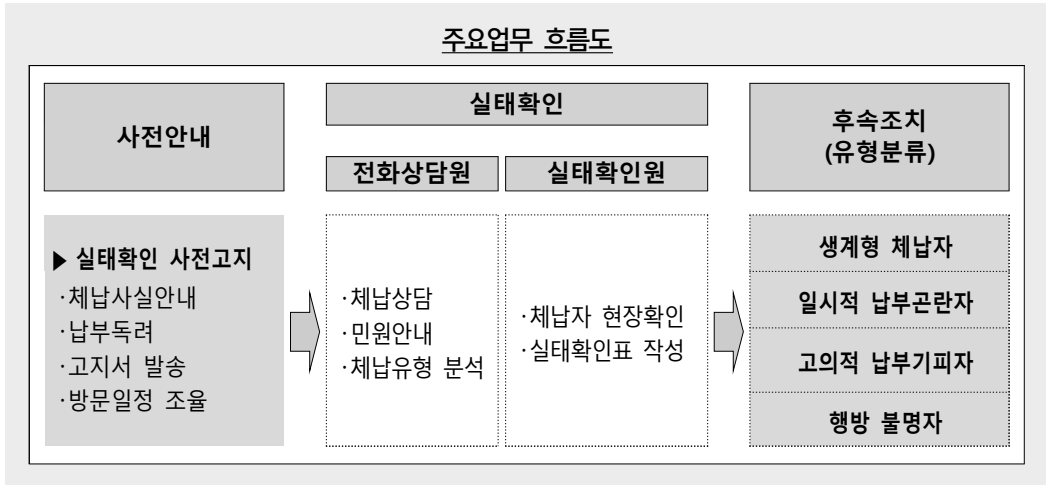
□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



□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

*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질문, 납부의사 및 납부계획 확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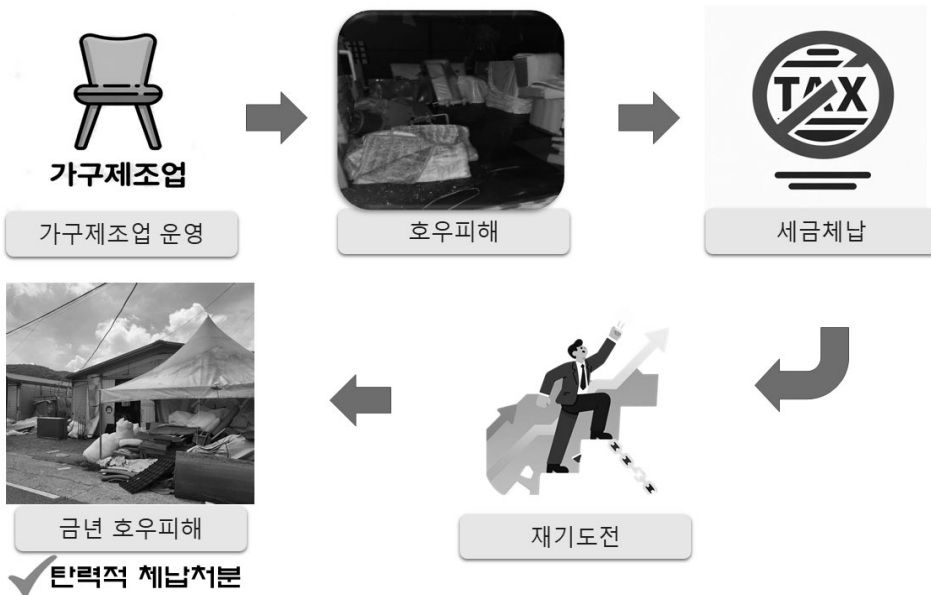
- (예비단계) ① 체납관리 총괄 담당자는 실태확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전화상담원에게 배정하고, ② 전화상담원은 방문대상 체납자에게 문자메시지·전화 등으로 실태확인 사전안내 후 ③ 실태확인원에게 방문대상 명단과 실태확인표 등을 교부
- (실태확인) 실태확인원은 전달받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실태, 생활환경, 체납사유 등을 질문·확인하는 등 체납자 유형분류를 위해 세밀하게 실태확인을 실시



◇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체납한 고령의 B씨는 홀로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 중.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취업지원 등을 연계하여 재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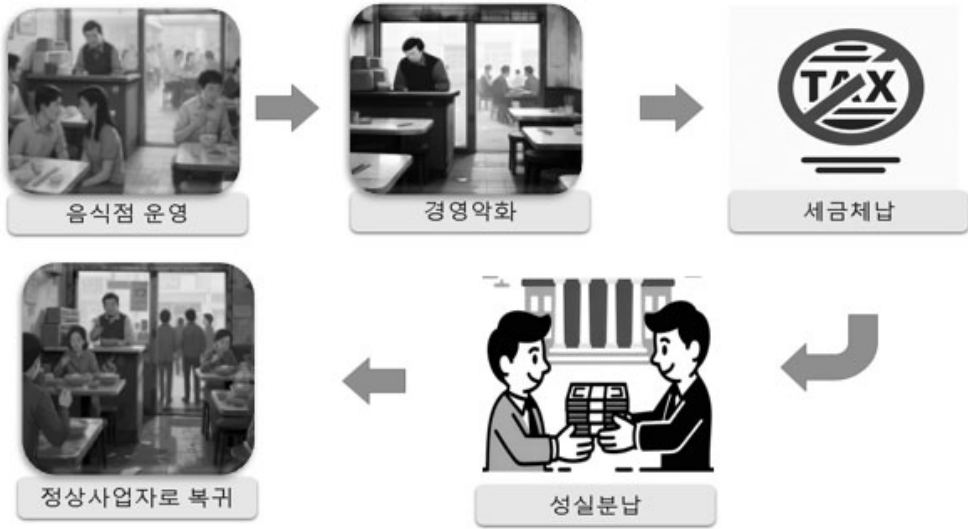
(유형 2) 일시적 납부곤란자 사례

유형 2-1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사업을 재개하여 성실하게 분납중인 체납자



◇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체납자 C씨는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 중. 세무서는 사업재개 지원을 위해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 유보 실시

유형 2-2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탄력적 강제징수로 납부여력을 회복한 체납자



◇ 코로나19 및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체납한 D씨는 30회 분납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였으며, 강제징수 유보이후 매출 증가로 체납액 완납

(유형③) 고의적 납부기피자 사례 (추적조사)

유형 ③-1 허위 근거당 설정으로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 ◇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E씨는 위장전입 후 자신의 고가아파트에 허위 근저당 설정하여 강제징수 회피
→ 허위 근저당 말소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고가 아파트 공매처분 추진

유형 3-2 재산을 은닉 후 호화주택에 거주하며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



- ◇ 전 처 소유의 초고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체납자 F씨는 재산 처분 양도소득대부업 소득 등을 은닉하고 양도·종합소득세 등 납부 거부
→ 전 처 소유로 추정되는 주거지 실태확인 후 거주지 수색 및 양도대금 은닉처 등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추진

■ 국세 체납관리단 문답자료

1.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작년 말 체납액이 110조원이 넘는 등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납문제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
 - * 누계체납액 : ('22) 102.5조원 → ('23) 106.1조원 → ('24) 110.7조원
- 체납액 축소와 여러 사회적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하여,
-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으로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함

2.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여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게 됨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발견하게 되면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복지부서)에 연계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업무를 함
- 반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지방청에 설치된 체납추적팀을 통해 철저한 재산·소득 분석 후 강제징수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연계할 예정임

3. 「국세 체납관리단」의 활동과 세무서 체납정리 업무와의 차이는?

- 세무서의 체납담당 공무원은 세법에 따라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권한을 가지면서, 직접적인 국세징수(徵收) 업무를 수행한다면,
-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 사업환경 등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하게 됨
- 체납자의 주소와 거소를 방문하여 재산상황·생활실태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



4.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징수하는 민간위탁제도와 차이점은?

- 국세채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조직으로 법적인 강제 징수가 아닌 사실확인, 체납액 안내, 각종 복지지원 활동에 집중하게 됨
 - 민간위탁제도는 외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역할이 다르며, 위탁된 체납자는 실태확인 대상이 아님

5.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 「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시민(기간제 근로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됨
 - 기간제 근로자는 방문안내 및 납부상담을 하는 전화상담원과 실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되며,
 -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체납관리단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

6. 민간인 기간제 근로자에 과도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닌지?

-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체납관리단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의무준수 장치를 두어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과세사유 등 민감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관련 상담이나 안내가 필요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지원 세무공무원 또는 체납담당 공무원이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또한, 보안교육, 보안서약, 정보 접근권한 제한, 위반시 처벌규정 등을 통해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

7. 생계형 체납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 복지가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긴급복지,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일자리 지원제도, 채무조정 제도 등을 안내하여 경제적 재기를 이루도록 지원할 예정임

8.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자가 발견될 경우 실태확인원은 해당 실태확인 내용을 체납담당자에게 인계하게 됨

9.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징수효과는?

-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문적인 징수활동이 아니며 체납액 징수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체납자 유형분류를 통해 징수가 필요한 체납자를 선별하여 징수역량을 집중하게 되므로 성남시·경기도의 운영 사례를 볼 때 체납액 축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10.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 총 3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3년간 총 2천명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활동하게 될 지역을 중심으로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11. 시범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전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하고자 어제부터 각 지방청별 대표세무서 1곳을 지정하여 2~3팀의 신규 세무공무원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음
 -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결과를 기초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아갈 예정임
 - * 활동지역 :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12. 「국세 체납관리단」 준비상황은?

-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TF」를 구성하여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 중임

- 법률근거와 활동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에 마련하여 국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상황임
- 기간제근로자 활동 지원 및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활용하는 공무원 조직도 협의 예정임

13. 「국세 체납관리단」의 목표와 기대효과는?

- 체납자의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징수행정의 역량을 악의적 체납자 등에 집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조치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 등 소외계층에게는 복지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경제재기를 돕고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